

보장비용(기초생계급여)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46조 규정에 따라 보장비용(기초생계급여)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, 이사·수취인불명·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사유가 발생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10월 14일



1. 공고내용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비용(기초생계급여) 처분사전통지
2. 공고기간 : 2026. 10. 14. ~ 2026. 10. 28.
3. 공고방법 : 구청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
4. 공고대상

연번	구분	납부자	생년월일	납부자 주소	납부 (예정)액	납부사유	공시송달 사유
1	기초 생계급여	한*인	73.10.16.	노원구 상계로2*길 **-4, *층 *호 (상계동, 천우빌라) 19통 7반	149,310원	부적정 수급	폐문부재
2	기초 생계급여	이*** 리	81.02.20.	노원구 동일로22*길 *5, 110*동 10*호 (상계동, 주공아파트) 11통 6반	26,690원	부적정 수급	폐문부재

5.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생활복지과(02-2116-3616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